

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7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1.

발 의 자 : 윤상현 · 김선교 · 고동진
조배숙 · 곽규택 · 김태규
김장겸 · 최보운 · 우재준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조정절차와 소송절차는 동일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관할 역시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고, 그러한 취지에서 「가사소송법」은 제51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조정사건의 관할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조정사건의 관할은 「민사소송법」 제8조에 따른 의무이행지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어음·수표의 지급지에 관한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등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부 다른 점이 있고, 그 결과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도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의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다른 법원으로의 사건의 이송에 이르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인바, 이는 소송경제에도 반하고 당사자에게도 큰 불편임.

이에 조정사건의 관할을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치시

켜, 당사자의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하고 조정절차와 소송절차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조).

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사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”을 “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(독촉사건을 포함한다)을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(專屬管轄法院)이나 당사자”를 “당사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에 관한 신청 또는 회부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관할법원) ① 조정사건은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지원(地方法院支院), 시법원(市法院) 또는 군법원(郡法院)(이하 “시·군법원”이라 한다)이 관할한다.</u> 1. <u>피신청인에 대한 「민사소송법」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 소재지</u> 2. <u>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</u> 3. <u>피신청인의 근무지</u> 4. <u>분쟁의 목적물 소재지</u> 5. <u>손해 발생지</u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은 <u>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(專屬管轄法院)이나 당사자</u>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.	제3조(관할법원) ① ----- <u>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(독촉사건을 포함한다)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② ----- ----- <u>당사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